

# 겸직자 전산정리 절차/ 유의사항

## □ 목 적

- 사회복지요원 복무기간 중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병무청에서 지원
- 신상이동자 및 겸직자에 대한 전산 자료관리 미흡으로 건강보험료 지원/ 환수에 따른 다수 민원발생
- 정확한 복무자료 전산 관리로 원활한 예산집행 및 민원불편 감소, 업무부담 완화

## □ 겸직허가자 처리절차

- 겸직허가서 접수/ 검토 → 겸직허가 → 전산입력
    - 전산 입력위치 : 사회복지포털 > 신상이동 > 겸직허가관리
  - 입력사항
    - 겸직기간, 시간, 근무형태, 담당직무, 겸직유형, 수입발생여부, 사유
  - 전산입력 시 유의사항
    - 겸직시작일 : 최소한 복무시작일로 입력
    - 겸직종료일 : 최대한 복무종료일로 입력
    - 겸직유형 : 생계유지, 봉사활동, 기타 중 반드시 1개 입력
    - 수입발생 여부 : 수입발생, 수입미발생 중 반드시 1개 입력
- ※ 복무기관장은 겸직신청 목적과 겸직허가의 적정여부 확인

14.26 / 2016.04.15 10:54 / 2000831

## □ 오류유형

### ○ 겸직허가 시 겸직시작일을 소급하여 잘못된 경우

- 겸직시작일 소급하여 처리하면, 건강보험료 지원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반납(환수)대상됨으로 반드시 최소 겸직신고일 이후로 입력하여야 함

- 복무시작일 : 2016. 1. 1.

- 겸직신고일 : 2016. 3. 1.

- 겸직시작일 : 2016. 1. 1.

- \* 1~3월 건보료를 지원받았으나, 겸직시작을 소급하여 처리하면 1~3월 건보료 지원받은 금액을 반납하여야 함

### ○ 겸직종료 신고 접수 시 기존 겸직허가 사항을 삭제하면 안 됨

- 사회복무포털에 허가사항을 삭제하여도 병무청에는 기록이 남게 되어 겸직종료자로 관리 되지 않아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지 못함

### ○ 겸직종료일 보다 이전에 겸직종료를 신고한 경우에는 기존 겸직종료일을 수정하여야함, 실제 겸직종료일이 아닌 겸직종료 신고일로 수정 ex) 기존허가일 2015. 1. 1 ~ 2016.12.30.

종료신고일 2016. 3.30. 인 경우

전산정리 : 기존허가일 2015. 1. 1. ~ 2016.3.30. 으로 수정

- \* 실제 종료일로 소급하여 처리하면 전산 상 종료가 안되어 계속 보험료를 지원받고 되고, 추후 확인 시 기간동안 보험료 반납해야함

### ○ 겸직종료일은 반드시 신고일 또는 이후로 하여함

- 겸직종료일을 소급하여 전산정리 한 경우 전산 누락 되어 겸직 허가자로 관리되어, 건강보험료 지원받지 못함

○ 겸직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시 겸직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기존의  
겸직허가 종료일을 반드시 재허가 겸직시작일보다 이전으로 수정

- 겸직기간 중복으로 인해 실제 종료를 하여도 겸직자로 관리 됨

ex) 기존허가 기간 : 2015. 1. 1. ~ 2016.12.30.

재 허가 기간 : 2016. 5. 1. ~ 2016. 8.31. 인 경우

기존허가 기간 : 2015. 1. 1. ~ 2016. 5. 1. 이전으로 반드시 수정

○ 겸직허가일보다 겸직종료일이 더 늦은 경우

- 겸직허가일 : 2016. 1. 1. 겸직종료일 : 2014. 1. 1.

○ 복무시작일 또는 소집해제일과 겸직허가 기간이 잘못된 경우

- 복무시작일 : 2016. 1. 1. 겸직시작일 : 2014. 1. 1.

- 소집해제일 : 2016. 1. 1. 겸직종료일 : 2018. 1. 1.

14.26 / 2016.04.15 10:56 / 2000831